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713
------------	-----

2023. 04. 27.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3. 4. 26. 김태수 의원 발의 (2023. 4. 26. 회부)

2. 제안이유

-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홍보 및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임차와 법률상담지원 및 피해 예방교육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20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이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중앙주

거복지센터(이하 “중앙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의 기능에 각각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2023년 4월 26일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조례 제20조 -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비교(중앙, 지역)〉

중앙센터 (제20조제1항)	지역센터 (제20조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정보 제공·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개발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5.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6.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8.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9.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안 -	
<p>< 신 설 >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p> <p>< 신 설 >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p>	<p>< 신 설 >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p> <p>< 신 설 >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p>

- 발의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붙임2. 참조).
-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제22조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2)를 근거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2022년 4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대행사업으로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에 포함하여 통합·운영하고 있음.3)

-
- 1)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

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

주 거 복 지 센 터

- 주거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비지원
-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 청년월세 대상자 정보관리 지원
- 청년임차보증금 이차지원
- 청년 주거지원 사업 대시민 홍보

S H 지 역 센 터

- 공공주택 일반관리
- 보증금, 사용료(임대료) 징수 등

「주거안심종합센터」

(1구(區) 1센터)

**주거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 SH지역센터(13개소), 지역주거복지센터(25개소), 청년월세지원센터(1개소), 청년주거상담센터(1개소)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합 일괄 제공토록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 이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 시 주거안심종합센터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상담지원 인력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종합대책’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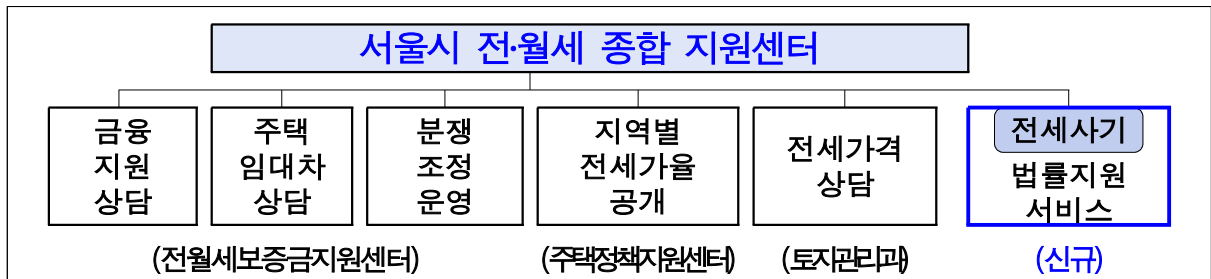
양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6.7.14, 2019.9.26>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⑤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행정2부시장 방침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종합대책(주택정책과-577, '23.1.10.)

근거로, 주택임대차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운영중에 있는 바(붙임 5.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 개정안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지역센터에서도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등이 가능해질 경우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전세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구분	서울시			정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주택정책지원센터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주요 업무	- 분쟁조정 및 위원회 운영 - 전세자금 대출 관련 금융 전반의 상담 - 주택임대차 상담	-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제공	- 임차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세가 적정성 검증	-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조치 법률 안내 - 피해자 전세금 대출 - 임시 거주 주택 제공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금융지원팀)	주택정책지원센터 (주택시장분석팀)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국토부 주택기금과
인력	상주 9명 (시선제 7명, 공무원 2명)	담당 주무관 1명	담당 주무관 1명	상주 10인
예산	59백만원 ('23년)	200백만원	-	약 1,800백만원

○ 종합하면, 범정부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대책(붙임2. 참조)’ 과 같은 맥락에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 홍보 및 예방교육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정은 타당하고 시의 적절하다 판단됨.

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최지현	02-2180-8216

[붙임1] 관계법령(p.7)

[붙임2]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 내용 및 추진현황(p.10)

[붙임3] 깡통전세 종합대책 세부과제(p.11)

[붙임4] 주거안심종합센터 개요(p.12)

[붙임5]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p.13)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주거복지센터의 기능) ①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정보 제공·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개발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9.30>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5.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6.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8.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9.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⑤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주거 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2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 내용 및 추진현황

※ 주택정책실 내부자료

구 분	추진현황	비고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23.02.08 : 중개업소 상시점검 시행 (서울시) 23.02.24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추진 (국토부) 23.02.27 ~ 5.31 :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시 (국토부-지자체)	국토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실시 지속 (2.27 ~ 5.31)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보증보험 가입 지원	23.1.16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약서 제출(사→복지부) 23.1.19 : 업무협약 변경 관련 협약은행 실무회의 23.2.23 : 복지부 방문설명 및 신속협약 요청 23.3.23 :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약 완료 화신(복지부→사) 23.4월말 : 업무협약 및 기관별 내부규정 변경 등	예외적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 연장 시행 (23.5월 초)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보증을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23.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건의(사→중기부) 23.2 : 자영업자 지원제도에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포함은 적절치 않다는 정부부처 의견 전달(중기부→사)	시행령 개정 불가 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금융지원은 어려움 (장기과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23.1.15 : 사무공간 재배치 및 전문인력 지원 협의 23.1.30 : 전문인력(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배치 등 23.2.1~ : 종합지원센터 상담업무 본격 운영	센터운영 상담실적 (총1,623건, '23.2.1~4.21 기준) 및 특이사례 모니터링 등 (23.3~)
자치구별/주택유형별 전세가율 공개	22.8 : 서울시 전월세시장 정보제공(서울주거포털) 23.1. : 민간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전세가율 공개	민간 플랫폼 확대 및 중개업소 자료 비치 (23.1~)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및 예방교육 실시	23.2~ : 주거안심종합센터 지적과, 부동산정보과 등 분산된 서비스를 주거안심종합센터로 통합 추진	서비스 통합 협의 /예방교육 실시 추진 (23 상반기)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격 신고제 신설	23.1.30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서울시→국토부)	소규모 신축주택 시세 분석 및 정보제공 (24~)
임대차 이상거래 분석/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23.1~ : 이상거래 분석방법 모니터링 추진방향 검토	위험주택 리스트 경찰청 제공 (23 하반기)
주택관리업자 책임 강화	23.1~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동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법시행령 개정 건의 (23.2)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등 정부-지자체 협업사항	23.2.21 : 전세사기 대응 정부-지자체 협의회(1차) 개최 23.2.28 : 정부→지자체 협업요청사항 검토 23.3.21 : 전세사기 대응 정부-지자체 협의회(2차) 개최 23.4.03 : 정부-17개 광역시도 전세피해정책 적극 지원 ※4월 3일부터 서울시도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접수 (창구역할)	국토부 등 정부-지자체 협업사항 지속 논의 등 (23.5~)

붙임3

서울시 강통전세 종합대책 세부과제

유형	구분	세부과제
1. 피해자 지원	금융 지원	❶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확대 확대 ❷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보증을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신규
	법률 지원	❸ (가칭)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 센터 신규
2. 피해자 예방	정보 제공	❶ 자치구별/주택유형별 전세가율 민간앱 공개 확대 ❷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및 예방교육 확대
	피해 예방	❸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보증보험 가입지원 신규 ❹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격 신고제도 신설 신규
3. 악성 임대인 대응	의심주택 관리	❶ 임대차 이상거래 분석 및 악성 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신규
	단속 및 처벌강화	❷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관리 확대 ❸ 주택임대관리업자 책임 강화 신규

붙임4

주거안심종합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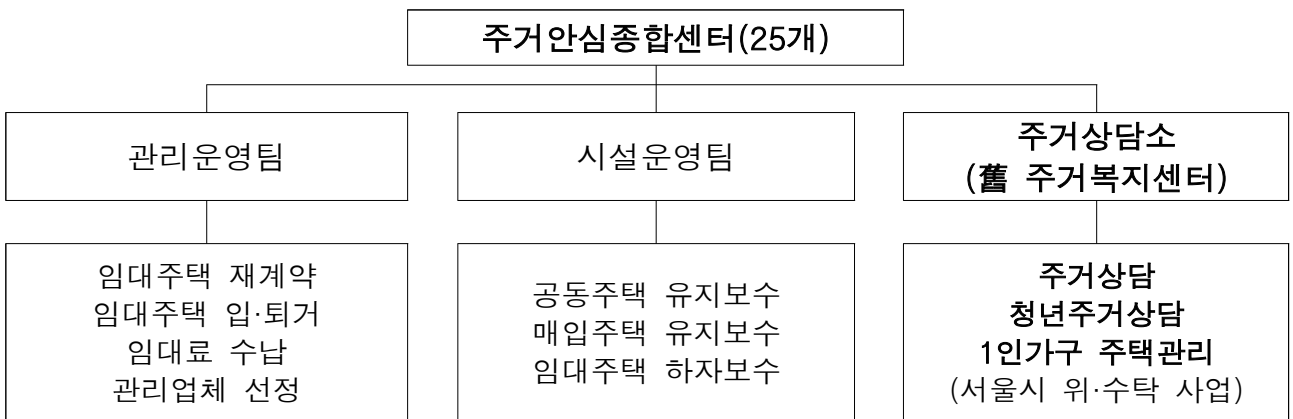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추진방향) 서울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통합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 (사업내용) 1區 1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 주거 상담, 주거비 지원, 주택공급 및 입주, 주택관리 등 주거복지 통합 서비스

(통합) 주거안심종합센터(1구 1센터)

현행	SH 지역센터	지역주거복지센터	(前)청년주거상담센터
주요 역할	· 임대주택 일반 관리 · 임대계약, 시설보수 등	·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 청년, 신혼부부 특화 주거 상담 · 청년 주거정책 연구 및 관리
운영 주체	SH	SH(9개소) 및 민간(16개소)	민간
운영 개수	총 13개소	총 25개소	(전) 1개소

■ 주거안심종합센터 구성



붙임5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

구분		업무내용	담당자
서울시 전·월세 종합 지원센터	[기존] 분쟁조정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 운영(심사관) -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조사·분석, 검토보고서 작성 등 ▶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법률지원, 민원 답변 처리 ▶ 전·월세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지원 ▶ 센터 실적 등 통계관리(월별 보고) 및 민원 분석 등 	시간선택제 2명
	[기존] 금융지원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실행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상담 및 신청서 심사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상담 등 	시간선택제 3명
	[기존] 임대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차 관련 일반상담 및 민원 응대 - 임대차 관련 법률 제·개정사항, 주요상담사례 등 안내 - 정부 및 서울시 임대차 지원정책 관련 정보제공 ▶ 센터 주요업무 및 민원발생 내용분석 지원 ▶ 자치구별 전세가율 등 전월세정보몽땅 관련내용 안내 	시간선택제 2명 공무직 2명
	[통합] 전세가격 상담 (토지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예정주택 적정 전세가격 대면상담, 신청접수 운영 ▶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울시 지도·점검사항 안내 ▶ 전세피해 관련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 신고·접수 등 	토지관리과 직원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피해 관련 임대차 계약내용(특약 등) 검토 ▶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금액 등 임대차 관련 문의 ▶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중개사 설명의무 등 안내 	공인중개사 2인
	[신규] 전문법률 지원서비스 (법률지원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피해 관련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방법 등 안내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상담 ▶ 전세사기 관련 민·형사상 소송가능여부 등 문의 	마을변호사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반환소송 전 지급명령신청제도 안내 ▶ 임차권등기명령 등 등기 관련 법령·제도 상담 ▶ 전세피해 관련 임차주택 경매·공매 등 절차 문의 	마을법무사 1인